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5호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주택임차인ㆍ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0. ~ 2. 2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07호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정광현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포상 대상,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다.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9조)

라. 포상 방법 및 포상 시기, 포상 절차,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3조)

마.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바. 중복수여의 금지, 포상의 취소 등, 포상 대장의 등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 18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기관·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의 공로장 수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후원명칭 사용승인)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및 교육성을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행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중복수여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의 취소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 제1호 공로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시행한 포상은 종전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내용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 ○ ○
성　　명 ○ ○ ○

(본　　문)

년　　월　　일

— 금박지 부착

순천시의회의장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 ○ ○
성　　명 ○ ○ ○

(본　　문)

년　　월　　일

— 금박지 부착

순천시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 ○ ○
성　　명 ○ ○ ○

(본　　문)

년　　월　　일

— 금박지 부착

순천시의회의장 ○ ○ ○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장

주소 또는 소속 ○ ○ ○
성　　명 ○ ○ ○

(본　　문)

년　　월　　일

— 금박지 부착

순천시의회의장 ○ ○ ○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관·단체	명 칭					
	소재지					
	전 화		FAX		E-mail	
	대표자			생년월일		

행사개요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장 소	
	행 사 목 적	
	주요행사내용	
	주최(주관)기관명	
	후원예정 기관명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행사 결과보고서

<table>
<tr><td>① 행 사 명</td><td colspan="6"></td></tr>
<tr><td>② 일시/장소</td><td>일시</td><td colspan="2"></td><td>장소</td><td colspan="2"></td></tr>
<tr><td>③ 행사기관</td><td>주최</td><td></td><td>주관</td><td></td><td>후 원</td><td></td></tr>
<tr><td>④ 참여인원</td><td colspan="6">※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td></tr>
<tr><td>⑤ 후원명칭
사용내용</td><td colspan="6"></td></tr>
<tr><td>⑥ 행사개최내용</td><td colspan="6"></td></tr>
<tr><td>⑦ 특기사항</td><td colspan="6">※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td></tr>
<tr><td colspan="7">「순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순천시의회 의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호 수	포 상 년 월 일	포상종별	포상기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비고
				직위 또는 직 급	소속 또는 주 소	성별	성 명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 등기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포상을 위한 증서나 패 제작.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2018. 11. 5.	의회사무과
2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	2022. 8. 31.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2023. 6. 9.	
4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2022. 4. 8.	의회사무과
5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2023. 8. 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6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2022. 1. 6.	
7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2018. 7. 10.	의회사무과
8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	2023. 4. 14.	의회사무과
10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	2020. 6. 8.	의회사무과
11	고흥군의회 포상 조례	2023. 9. 26.	의회사무과
12	곡성군의회 포상 조례	2022. 3. 18.	의회사무과
1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1. 1.	의회사무국
14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3. 11. 24.	의회사무과
15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2. 26.	의회사무국
1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10.	의회사무국
17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2022. 2. 3.	의회사무국
1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22. 4. 5.	의회사무과
1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2022. 9. 2.	의회사무국
2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사무국
21	광주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22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 4.	의회사무국
23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2023. 9. 27.	의회사무과
24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 5.	의회사무과
25	군산시의회포상조례	2022. 2. 7.	의회사무국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6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2018. 3. 13.	의회사무과
27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2016. 3. 15.	의회사무과
28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2022. 8. 17.	의회사무국
29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	2014. 10. 31.	의회사무국
30	김포시의회 포상 조례	2016. 12. 30.	의회사무국
31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2017. 3. 9.	의회사무국
32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2023. 10. 18.	의회사무국(의정)
33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의회사무과
34	담양군의회 포상 조례	2023. 2. 24.	의회사무과
35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국 의정팀
36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2023. 6. 30.	의회사무과
3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2019. 3. 11.	의회사무과 의정팀
3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2022. 3. 21.	의회사무국
3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2022. 3. 30.	의회사무국
4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16. 2. 29.	의회사무국
4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2016. 5. 12.	의회사무국
4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1. 4. 12.	의회사무국
4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2016. 10. 31.	의회사무국
44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0. 7.	
4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2020. 12. 10.	의회사무과
4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2023. 2. 17.	의회사무과
4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2021. 12. 28.	의회사무국
4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0. 18.	의회사무국
4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2023. 10. 10.	의회사무국
50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3. 8. 11.	
5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0. 20.	의회사무국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2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1. 8.	의회사무과
53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	2022. 5. 20.	
54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2022. 1. 10.	의회사무국
55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	2023. 11. 6.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56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 11.	의회사무과
57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사무국(의사담당)
58	보성군의회 포상 조례	2009. 3. 23.	의회사무과
59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2022. 4. 22.	의회사무과
60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과
6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28.	의회사무국
6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의회사무과
6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1.	의회사무국
64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과
65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2023. 11. 1.	의정계
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	2022. 4. 26.	의정담당
6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2022. 4. 15.	의회사무국
68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사무국
6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6.	의회사무국
70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3. 4. 5.	의회사무과
7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포상 조례	2020. 6. 30.	의회사무과
7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2. 23.	의회사무국
7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의회사무과
74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9.	기획인사담당관
7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과
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국
77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 5.	의회사무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8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2. 4. 13.	의회운영과
79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2018. 10. 25.	의회사무국
80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2. 27.	의회 의회사무과 입법지원담당
81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	2023. 5. 26.	의회사무과
82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사무국
83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2023. 10. 10.	의회사무국
8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2023. 10. 4.	의정담당관
85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	2022. 2. 25.	
86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2015. 2. 12.	의정팀
87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2022. 1. 10.	의정
88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8.	의회사무국
89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2022. 4. 15.	의회사무국
90	안동시의회 포상 조례	2023. 9. 22.	의회사무국
91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	2020. 11. 18.	의회사무국
92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2017. 3. 24.	의회(의회사무과)
93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2023. 3. 31.	의회사무국
94	양구군의회 포상조례	2022. 12. 28.	의회사무과
95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2015. 9. 9.	의회사무국(의정팀)
96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2015. 12. 31.	의회사무과
97	양평군의회 포상 조례	2015. 7. 20.	의정팀
98	여수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의회사무국
99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 10.	의회사무과
100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2023. 9. 19.	의회사무과
101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8.	의회사무과
102	영암군의회 포상 조례	2020. 9. 24.	의정팀
103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3. 4. 10.	의회사무국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04	영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3. 3. 1.	의회사무국
105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2016. 7. 15.	의회사무과 의정팀
106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2020. 12. 28.	의회사무과
107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2009. 6. 11.	의회사무과
108	완도군의회 포상 조례	2015. 12. 31.	의회사무과
109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사무국
110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2023. 3. 31.	의회사무국
11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8.	의회사무국
11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19. 12. 26.	의회사무과
1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6.	의회사무과
11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2017. 3. 2.	의회사무국
115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2. 29.	의정담당관
11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 3.	의회사무국
117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118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2018. 11. 5.	의회사무과
119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1. 9.	의회사무과
120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의회 의회사무과
121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2023. 9. 22.	의회사무국
122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3. 4. 6.	의회사무과
123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	2015. 3. 2.	
12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2022. 2. 17.	의회사무과
1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1. 14.	
12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	2022. 12. 29.	의회사무국
12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2020. 5. 18.	의회사무국
12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4.	의회사무국
129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0.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30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2022. 3. 18.	의회사무과
131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과
132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2023. 6. 1.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33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	2021. 12. 31.	
134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2.	의회사무국
135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1. 9.	
13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2023. 7. 14.	총무담당관
137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2023. 2. 24.	총무팀
138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2023. 5. 4.	의회사무과
139	진도군의회 포상 조례	2023. 9. 20.	의회사무과
140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2015. 12. 30.	의회사무과
141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3. 5. 15.	의회사무국
142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2. 19.	의회사무과
143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2023. 4. 6.	의회사무과
144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2020. 11. 17.	의회사무국(오승현)
145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2022. 8. 1.	의회사무국
146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 13.	의회사무과
147	청양군의회 포상 조례	2020. 7. 15.	의사팀
148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1. 12. 29.	의회사무국
149	충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3. 7. 14.	의회사무국
150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2022. 4. 11.	총무담당관
151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2023. 4. 7.	
152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2020. 5. 8.	의회사무국
153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2022. 10. 14.	
154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2019. 8. 9.	의정팀
155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2023. 4. 10.	의회사무국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56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2023. 9. 25.	의회사무국
157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2015. 12. 30.	의회사무과
158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2020. 9. 29.	의회사무국
159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2023. 3. 7.	의회사무국
160	함양군의회 포상 조례	2020. 1. 2.	의회사무과
161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2020. 3. 10.	의회사무과
162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2023. 8. 10.	의회사무과
163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2023. 7. 3.	의회사무과
164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2023. 8. 1.	의회사무과
165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2019. 10. 18.	의회사무국
166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2022. 12. 8.	의회사무과
167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2021. 7. 16.	의회사무과
168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2023. 5. 1.	의회사무과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3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순천시 새로운 CI 개발(SUNCHEON 순천시)

○ 민선 7기 때 사용한 브랜드슬로건(Suncheon) 삭제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상징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용어정리) “심볼마크”를 “워드마크”로 수정하고 “브랜드슬로건” 용어 삭제

○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의미에 관한 사항**

- (제1호) “심볼마크”를 “워드마크”로 수정
- (제3호) 브랜드슬로건 삭제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상표법」 제2조 및 제33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3. ~ 2024. 2. 13.)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2.(가족복지과-2411호)
-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22.(일류도시기획단-387호)
-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23.(예산실-1001호)
-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3.(순천시 공고 제2024-210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을 ““상징물”이란”으로 하고,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동물”을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심 볼”을 “워 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워드마크】

워드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천혜의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디자인이다.

시민들이 'SUNCHEON' 을 직접 그리며 진취적으로 나아감을 역동적인 붓터치에 담아냈다.

또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계 속의 도시,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영문형 워드마크이다.

순천시의 워드마크 중 ‘ ’모양은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의 물길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나타낸다.

휘감고 있는 형태의‘ ‘는 생태, 문화, 관광, 미래경제, 복지·의료 등 전 분야를 선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 ’는 도심 속에 자리한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표현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며 세계속의 도시로 비상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워드마크 작도법

워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하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워드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워드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전용색상 선정

전용색상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 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PANTONE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흑두루미 블랙(SCC-N005) / 오천광장 그린(SCC-N026) / 순천만 오렌지(SCC-N008) / 짱뚱어 블루(SCC-N032)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I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흑두루미 블랙
SCC-N005
R 68 G 64 B 78
C 78 M 76 Y 59 K 25

오천광장 그린
SCC-N026
R 108 G 153 B 49
C 65 M 29 Y 100

순천만 오렌지
SCC-N008
R 229 G 102 B 70
C 11 M 73 Y 71

짱뚱어 블루
SCC-N032
R 77 G 148 B 168
C 71 M 33 Y 32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80㎝
- 게 양 기 : 210㎝×140㎝(대)
  150㎝×100㎝(소)
- 가 로 기 : 135㎝×70㎝
- 수 기 : 30㎝×20㎝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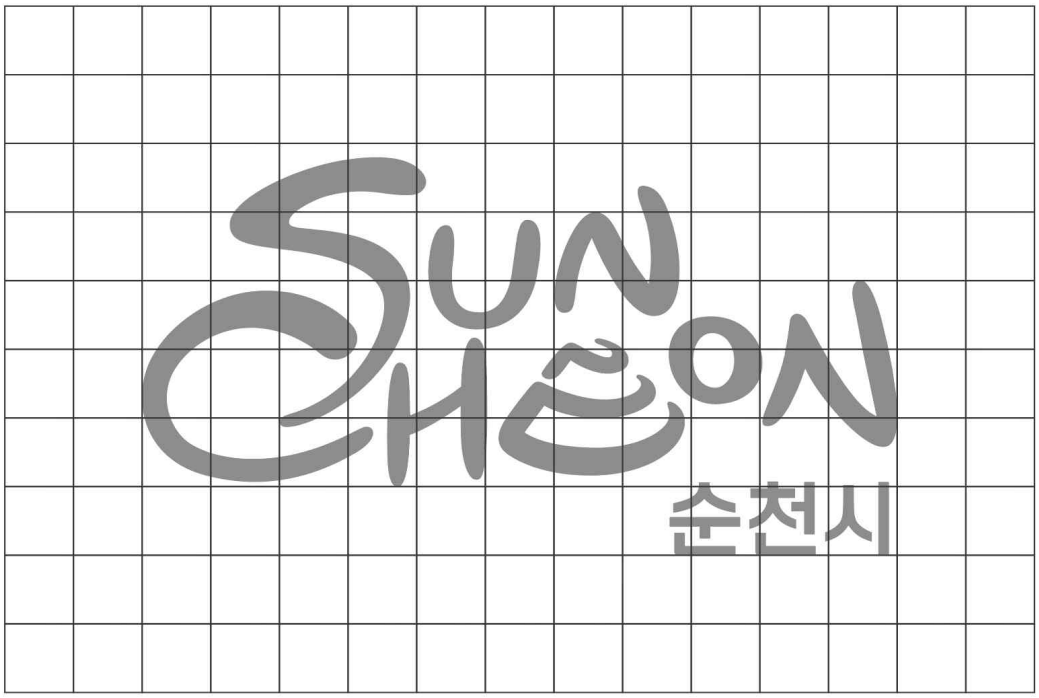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문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워드마크, 마스코트, 동물 ----------.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 볼 마 크 : "별표 1" 2. (생 략) 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4. ~ 6. (생 략)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 1. 워 드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심볼마크】 심볼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워드마크】 워드마크는 순천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심볼마크중 모양은 전통 기와지붕의 형상으로 순천시가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도시임을 나타내며 '사람人'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는 방향표시로써 21세기 중심도시로써 웅비하는 순천시의 모습이기도 하다.

모양은 낙안읍성의 성곽형태를 모던하게 표현하였고 3개의 옐로우색 윤곽은 순천시가 교육, 산업, 관광 도시를 의미하며 4개의 브라운 경계부분은 문화, 예술, 교통, 전통을 나타낸다.

외곽형태인 은 떠오르는 태양의 형태를 나타내며 순천시민의 일체감을 나타낸다.

모양은 순천시 이니셜 'S'를 시각화한 것으로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나타내며 순천만 갯벌에 힘찬 물줄기를 상징하며 순천인의 힘찬 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심볼마크 작도법

심볼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 시키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심볼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심볼마크의 재생은 컴퓨터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천혜의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미래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린 디자인이다.

시민들이 'SUNCHEON' 을 직접 그리며 진취적으로 나아감을 역동적인 붓터치에 담아냈다.

또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세계 속의 도시, 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영문형 워드마크이다.

순천시의 워드마크 중 ' '모양은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 습지의 물길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나타낸다.

휘감고 있는 형태의' '는 생태, 문화, 관광, 미래경제, 복지·의료 등 전 분야를 선도하며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 '는 도심 속에 자리한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표현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며 세계속의 도시로 비상하는 순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워드마크 작도법

워드마크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극대화하고 순천시의 올바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워드마크 활용원칙을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워드마크의 재생은 컴퓨터 데이터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자료를 사진복제의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본 항에 제시된 비례규정(Grid System)에 따라 정확하게 작도하여야 한다. 본 작도법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드(Grid) 포인트(Point)를 찾아서 작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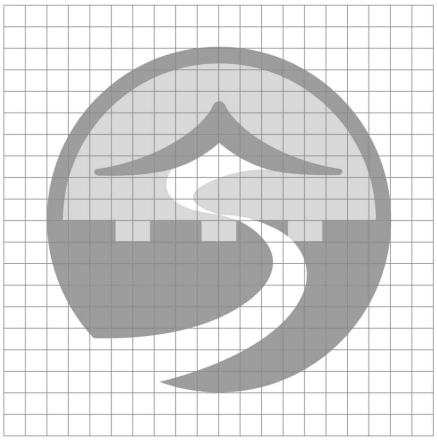

전용색상 선정

전용색상은 심볼마크, 로고타입과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재생원고 또는 디아이씨(DIC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 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주색(Main Color)인 순천 밤색이며, 보조색인 노랑색, 청색, 녹색, 빨강색, 금색, 은색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C.I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주색(Main Color)

순천시 밤색 or DIC 322C

보조색(Sud Color)

순천시 노랑색 or DIC 165C

순천시 청색 or DIC 182C

순천시 녹색 or DIC 2560C

순천시 빨강색 or DIC 2497C

순천시 금색 or DIC 620C

순천시 은색 or DIC 621C

전용색상 선정

전용색상은 워드마크와 더불어 순천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 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PANTONE Color 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 순천시의 전용색상은 흑두루미 블랙(SCC-N005) / 오천광장 그린(SCC-N026) / 순천만 노을 오렌지(SCC-N008) / 짱뚱어 블루(SCC-N032)이다. 적용매체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CI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흑두루미 블랙
SCC-N005
R 68 G 64 B 78
C 78 M 76 Y 59 K 25

오천광장 그린
SCC-N026
R 108 G 153 B 49
C 65 M 29 Y 100

순천만 오렌지
SCC-N008
R 229 G 102 B 70
C 11 M 73 Y 71

짱뚱어 블루
SCC-N032
R 77 G 148 B 168
C 71 M 33 Y 32

[별표 3]

브랜드슬로건 모양과 의미

1. 모양

2. 의미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은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브랜드 슬로건 '人(in) Suncheon'은 사람 인(人)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도시임을 붓터치로 표현했다.

특히 영문 in은 미국, 유럽 등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도와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sun과 on의 빨간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슬로건 人(in) 앞에는 순천시 및 시민들이 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자유롭게 담아서 표현이 가능하다.

3. 색상

<삭 제>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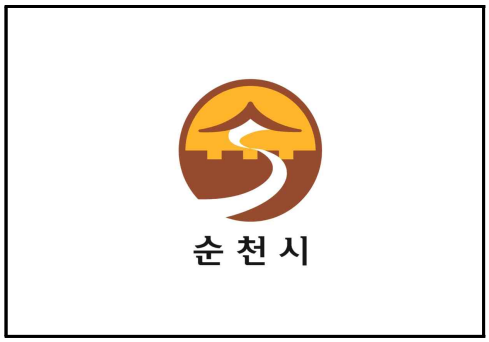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80㎝
   - 가 로 기 : 135㎝×70㎝
   - 게 양 기 : 210㎝×140㎝(대)
   - 수 기 : 30㎝×20㎝
     150㎝×100㎝(소)
2. 전체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마크는

는 밤색, 노랑색,

은 백색으로 하며, “순천시”글씨체는 로고타입으로 하면 흑색으로 표시한다.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4]

시기의 규격과 모양

1. 규격
   - 본기, 행사용 : 120㎝×80㎝
   - 가 로 기 : 135㎝×70㎝
   - 게 양 기 : 210㎝×140㎝(대)
   - 수 기 : 30㎝×20㎝
     150㎝×100㎝(소)

순천시 MARK 및 FLAG 디자인

가로 : 세로 비율은 3:2

글씨크기는 가로길이 1/15이며, 글씨체는 순천시 로고타입 서체를 사용

[별표 5] **문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한다.	[별표 5] **휘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문장** 크기는 용도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 순천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CI(심벌마크) 개발에 따른 시설물 교체 수요조사 알림
(기획예산실-12394호 / 전 부서 대상 / CI 교체에 따른 교체 비용 조사)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857,813	−285,938	−285,938	−285,937	−	−
세입(a)	−	−	−	−	−	−
세출(b)	857,813	285,938	285,938	285,937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857,813	285,938	285,938	285,937	−	−
시 비	857,813	285,938	285,938	285,937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총 소요예산 : 857,813천원

○ 산출내역 *** 별도 첨부(붙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일류도시기획단 단 장 김 선 순 (☎ 749-5540)

○ 일류도시기획단 팀 장 김 동 영 (☎ 749-5551)

붙임 부서별 CI 교체 산출내역

국·소	과·소	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고
합 계			857,813	
행정안전국	총 무 과	▸순천시기(회의실, 청사) ▸공무원증 목걸이	8,150	
	자 치 행 정 과	▸여순사건 및 철도관사마을 안내판 ▸시민협력센터 주차장 펜스	32,000	
	안 전 총 괄 과	▸그늘막 안내 스티커(105개) ▸여성아동안심귀갓길 안내판	11,010	
	회 계 과	▸안내판, 간판, LED, 포스터 등	13,000	
미래산업국	경 제 진 흥 과	▸안내판, 조형물	5,500	
	기 후 에 너 지 과	▸미세먼지 알리미, 대기측정 안내판 등	4,300	
	디 지 털 정 책 과	▸안내판(238개)	2,000	
문화관광국	문 화 예 술 과	▸시설물, 인쇄물, 안내판 등	2,990	
	문 화 유 산 과	▸안내판	5,000	
	관 광 과	▸관광 안내판(드라마촬영장, 에코촌 등)	20,900	
	도 서 관 운 영 과	▸도서관별 시설물, 시기 등	37,150	
	체 육 산 업 과	▸체육시설 사용 안내판	4,000	
	체육시설운영과	▸경기장 이용 안내판 및 간판	1,300	
	낙 안 읍 성	▸안내판, 표지판, 간판	20,000	
	문 화 예 술 회 관	▸안내판, 간판, 시설물	2,800	
시민복지국	노 인 복 지 과	▸안내판, 입간판, 현판, 소식판 등	27,943	
	보 육 아 동 과	▸현판	150	
	가 족 복 지 과	▸안내도, 교육안내판, 간판	3,350	
	허 가 민 원 과	▸민원서류 외국어 번역본	1,500	
	토 지 정 보 과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등)	100,000	

도시디자인국	교통정책과	▸안내판, 표지판, 온누리 키오스크, 온누리자전거, 버스 등	57,300	
	교통관리과	▸주차장·버스정보·교통관제시설물·버스 승강장·화물차고지 안내판	8,300	
	도시공간재생과	▸간판(20개)	4,000	
	건설과	▸표지판, 부착물, 간판, 안내판	63,000	
	건축과	▸육교현판, 현수막 게시대	9,000	
	도로과	▸가로등 제어기, 가로등, 보안등	60,000	
	공원녹지과	▸안내판(168개)	60,800	
보건소	보건의료과	▸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 안내판, 이정표 및 현황판	22,700	
	질병관리과	▸자살예방 로고젝터	11,55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센터 입간판, 도시텃밭 입간판 및 게시판 등	10,000	
	친환경농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내판 및 간판	1,550	
	농식품유통과	▸도매시장 간판 및 안내판	9,000	
	동물자원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간판	3,500	
	기술보급과	▸원예과학원 간판 및 조형물, 꽃육묘장·미생물센터 간판 등	48,700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청소도구함, 불법투기 경고판·CCTV, 재활용도움센터 간판 등	45,510	
	환경관리과	▸안내판(36개)	360	
	산림자원과	▸입구 안내판 및 간판, 이정표 등	50,000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정문·수경시설 안내판 등	3,000	
정원도시센터	정원운영과	▸관광안내판 및 각종 안내문	6,000	
읍면동		▸간판 및 안내판(24개 읍면동)	80,500	

참고	관련 법령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4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장기재직 동기 부여·사기진작

○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2. 주요내용

○ **(안 제16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3항) 재직기간 5~10년차 장기재직 휴가 신설 : 5일**

-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안 제17조제3항제2호) 분할사용 기준 1회 3일 이상 사용 → 삭제**

○ **(안 제17조제6항)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 : 입영 → 입대**

- "입영 자녀 ", "입영 시" → "입대 자녀", "입대 시"

○ **(안 제17조제8항)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 "다만,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7조의7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4. ~ 2. 13.) 결과: 의견 있음

연번	제출자	자치법규 내용	제출의견	비고
1	세정과 (김두홍)	조례 16조(특별휴가) 제3항제2호 분할사용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1일 3일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인 부서인 경우 장기재직 휴가를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삭제 요청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4.(가족복지과-2602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24.(예산실-10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4.(순천시 공고 제2024-22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3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영"을 각각 "입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17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1. 휴가 일수	1. -------
<신 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가. ~ 다. (생 략)	나. ~ 라.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생 략)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생 략) **제17조** ~ **제19조** (생 략)	⑥ -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 ⑦ (현행과 같음) ⑧ ----------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 ~ **제20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총무과 과장 김영남(☎ 5457)
총무팀장 최홍미(☎ 5616)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5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신축건물 증가(원룸 등)에 따른 분리 요구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3개통 9개반 신설
-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75통 ~ 76통
- 조례택지 원룸 등 신축건물: 77통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3. ~ 2. 12.)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17.(가족복지과-19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17.(자치행정과-923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9.(예산실-7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2.(순천시 공고 제2024-18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왕조1동란 중 10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74통란 다음에 75통, 76통, 7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왕조1동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	302동
		3	303동
		4	304동
	76	1	305동
		2	306동
		3	307동
		4	308동
	77	1	조례동 705-1 ~ 8, 1707-1 ~ 14, 1711-1 ~ 12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왕조1동	9	6	(생략)
	10	1	조례동 1695, 1697-1~1697-12,< 1712-1~1712-9, 1713-1~1713-9, 1714-1~1714-9, 1721-1~1721-9
		2	조례동 1696-1~1696-9, 1704-1~1704-5, 1705-1~1705-2, 1707-1~1707-9, 1708-1~1708-6, 1711-1~1711-9
		3	조례동 1706-1~1706-5, 1709-1~1709-6, 1710-1~1710-2, 1719-1~1719-17, 1720-1~1720-9, 1194-6
	11	1	(생략)
	⋮	⋮	⋮
	74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개 정 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왕조1동	9	6	(현행과 같음)
	10	1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11	1	(현행과 같음)
	⋮	⋮	⋮
	74	3	(현행과 같음)
	75	1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	302동
		3	303동
		4	304동
	76	1	305동
		2	306동
		3	307동
		4	308동
	77	1	조례동 1705-1 ~ 8 1707-1 ~ 14 1711-1 ~ 12
		2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3개 통, 9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82	885	3	
반 장	2,450	2,459	9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세입(a)	-	-	-	-	-	-
세출(b)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97,050	19,410	19,410	19,410	19,410	19,41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19,410천원/연간(이·통장 3명, 반장 9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400,000원×12월×3명=14,400,000원
- 이·통장 상여금 : 400,000원×2회(설, 추석)×3명=2,400,000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3명 =1,440,000원
- 이·통장 통신비 : 20,000원×12월×3명=72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9명=450,000원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과장 이 수 동(☎ 5453)
자치행정팀장 이 명 진(☎ 5625)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6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폐지이유
  ❍ 승주읍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활용도 저조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음
  ❍ 승주읍 다목적회관 철거 후,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

2. 주요내용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

3. 폐 지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8. ~ 2024. 2.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2.(예산실-532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59호)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회계과란 중 제5호를 삭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폐지이므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회계과	과장	최광수(☎ 5471)
		재산관리팀장	이승희(☎ 5688)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0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일부개정, 2023. 6. 11.시행)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
- (구성인원) 7인 이내 → 10명 이내
- (부위원장) 국장 → 과장
- (임기) 연임 가능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간사) 지명업무 담당 팀장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4. 1. 23. ~ 2. 13.):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8.(가족복지과-764호)
-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1.(예산실-430호)
-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3.(순천시 공고 제2024-203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위원회 참석 수당 (순천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위원회 기준 1인당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시 13만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참여자)

○ 토지정보과	과장	나용준(☎ 5520)
	주소공간정보팀장	채강묵(☎ 5867)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u>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1.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 · 도 지명위원회 및 시 · 군 · 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08호

발의연월일 : 2024. 2 .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이세은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

-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삭 제>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삭 제>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삭 제>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삭 제>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제22조 및 제23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현황	주요 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 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제22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　　적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기존 조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순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순천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순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9조(상인회 재정지원) 순천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제1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순천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순천시장은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순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순천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순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등 수탁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순천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순천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순천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순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순천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09.23>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순천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3>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1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순천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21.09.23>

[본조신설 2019.10.31]

제2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순천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경우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23]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순천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본조신설 2021.09.23]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23]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21.09.23]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07.31>

[제19조에서 이동 2019.10.31, 제22조에서 이동 2021.09.2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9.10.31, 제23조에서 이동 2021.09.23]

부칙 <조례 제1819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20.07.31>[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2조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 ⑱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7호, 2021.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09호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이세은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4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으로 본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명부,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시보 및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를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제4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 (제8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지정 확인서 기재	→	지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제5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　　적 :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의 지원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2. 30.	
2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7.	지역경제과
3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	경제기업과
4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1. 30.	도시경제과
5	공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2023. 5. 1.	경제과
6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시민경제과
7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0. 13.	경제정책과
8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4. 18.	소상공인지원과
9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1. 8.	소상공인지원팀
10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21.	경제정책팀
11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8.	경제활력과
12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0. 28.	일자리경제과
13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2. 27.	일자리경제과
1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1. 15.	지역경제활력과
15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지역경제과
16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 9. 30.	지역경제과
17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일자리경제과
18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21.	민생경제과(전통시장팀)
19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1. 9.	생활경제과
20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3. 11.	지역경제과
21	경상남도 통영시	2022. 8. 11.	일자리경제과
22	경기도 포천시	2023. 9. 27.	일자리경제과
23	전라남도 함평군	2023. 9. 27.	인구경제과
2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1. 3. 10.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 28.	일자리경제과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2. 16.	경제과
27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3. 18.	일자리경제과
28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지역경제과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2. 6.	일자리정책과
30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1.	일자리경제과
31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32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2. 8.	지역경제과
33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5. 16.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34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2. 11. 9.	일자리경제과
35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14.	경제전략과
36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2. 29.	경제계
37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0. 6.	일자리경제과
38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30.	일자리경제과
3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12. 28.	경제진흥과
40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7. 15.	경제녹지과
4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5. 2.	일자리경제과
4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8. 10.	일자리경제과
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12.	일자리경제과
4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2023. 5. 22.	지역경제과
45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5. 26.	경제과
46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10. 1.	투자경제과
47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6. 1.	일자리경제과
4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7.	지역경제과
4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8. 4.	지역경제과
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5. 6.	지역경제과
5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7.	지역상권활성화과

5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5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1. 10.	지역경제과
5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29.	지역경제과
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15.	일자리경제과
56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0. 7.	지역경제과
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6.	경제진흥과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경제진흥과
5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7. 6.	지역경제과
6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6.	지역경제과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9. 30.	경제진흥과
6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14.	일자리경제과
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5.	지역경제과
6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지역경제과
65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4.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
6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21.	시장활성화팀
67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9.	전통시장과
68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지역경제과
69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0. 12. 18.	소상공인과
70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	지역경제과
71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6.	전통시장경영팀
72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2020. 12. 10.	소상공인과
73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9.	섬안전개발국 경제유통과
74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12. 15.	기업경제과
75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일자리경제과
76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팀)
77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1. 3. 15.	일자리경제과
78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8. 11.	지역경제과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10호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강형구 의원, 정광현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오행숙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서선란 의원, 양동진 의원,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장경원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라.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안 제6조)

마. 공공데이터의 및 데이터기반행정 이용 활성화(안 제7조 ~ 안 제14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통합·품질관리 근거 마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규정(제공하지 않는 예외 사항 명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바. 사무의 위탁(안 제15조)

사. 평가 및 포상(안 제16조)

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7조)
자.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 18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 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 · 활용 · 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수집 · 통합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 ·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 · 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 · 활용 제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도입 · 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이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 · 지역 ·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 · 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 ·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데이터의 분석 · 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4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 · 교통 · 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 및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김태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

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김해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1. 2.	스마트도시담당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0. 6.	정보통신과
3	대전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21.	정책개발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2023. 7. 6.	스마트정보과
5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7. 14.	데이터산업과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9. 27.	스마트정책실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4. 11.	정보통신과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7. 10.	토지정보과
9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 10.	정보통신과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 28.	홍보미디어실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8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23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호)** 재단의 사업 수행 내용에 관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삭제

○ **(안 제6조)**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추가

○ **(안 제12조제1항)**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관련 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관한 사항 삭제

○ **(안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상사용 또는 대부 가능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6. ~ 2024. 2. 5.)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9.(가족복지과-292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10.(경제진흥과-1423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6.(예산실-6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6.(순천시 공고 제2024-2767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설립 및 운영에 드는"을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설립과 운영"을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u>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 1. ~ 3. (현행과 같음) 4.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u>**설립 및 운영에 드는**</u>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출연 또는 보조)** ---------- <u>**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u> ----------.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u>**시장,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u>**시장**</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u>**설립과 운영**</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 <u>**설립·운영 및 사업수행**</u>----------.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2024~2028)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8,010,000	-1,010,000	-2,000,000	-2,000,000	-1,575,000	-1,425,000
세입(a)	-	-	-	-	-	-
세출(b)	8,010,000	1,010,000	2,000,000	2,000,000	1,575,000	1,425,000

※ 1차년도 10,000천원은 (재)순천시상권활성화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8,010,000	1,010,000	2,000,000	2,000,000	1,575,000	1,425,000
국 비	4,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787,500	712,500
시 비	4,010,000	510,000	1,000,000	1,000,000	787,500	712,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출

○ 사 업 명: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2024. ~2028.

○ 사업주체: 상권관리기구(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 비용산출 근거: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과장	윤선옥(☎ 5487)
		지역경제팀장	최종용(☎ 5733)

참고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6. 12.>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19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감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총감독직 폐지
○ 총감독 임무를 각 종목(소프트테니스·양궁·유도) 감독의 임무로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단원에서 “총감독” 삭제
○ **(안 제4조제4항)** <삭제> 총감독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제5항)** 각 종목 감독의 임무 내용으로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삽입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2. 27. ~ 2024. 1. 16.)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2. 25.(가족복지과-353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2. 13.(기획예산실-173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2. 27.(순천시 공고 제2023-2642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감독, 감독”을 “감독”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훈련”을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경기부의 단원은 총감독,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감독 ----------.
제4조(임무) ① ~ ③ (생 략) ④ 총감독은 경기부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⑤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육성한다. ⑥·⑦ (생 략)	제4조(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훈련 ----------.
	⑥·⑦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체육산업과	과장	김미자(☎ 6650)
		스포츠마케팅팀장	임영천(☎ 665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 고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 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 · 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 · 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의 운영규정에의 적합 여부
2. 합숙소의 운영 · 관리 실적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실적
4.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실적(훈련의 사전통지 실적을 포함한다)
5.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 · 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운영 실적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2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및 시설물(직매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수당 지급 및 아이디어 제안

-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 포상 근거 마련

○ **(안 제5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를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로 대체

-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기능 중복으로 위원회 간소화

○ **(안 제15조, 제16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방법 명시화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7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2. 18. ~ 2.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3.(가족복지과-249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5.(예산실-6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39호)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 등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4장**을 제5장으로 하며 제17조 앞으로,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19조 앞으로, **제6장**을 제7장으로 하며 제21조 앞으로,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25조 앞으로, **제8장**을 제9장으로 하며 제29조 앞으로, **제9장**을 제10장으로 하고 제31조 앞으로 한다.

제4장(제15조 및 제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제15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운영주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7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운영주체”란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8.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 ③ (생 략)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 등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시장은 로컬푸드 육	제5조(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현 행	개 정 안
성·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삭 제>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삭 제>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장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신 설>	제15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직영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운영주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6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생 략)	제5장 (현행 제4장과 같음)
제15조·제16조 (생 략)	제17조·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5장 (생 략)	제6장 (현행 제5장과 같음)
제17조·제18조 (생 략)	제19조·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제6장 (생 략)	제7장 (현행 제6장과 같음)
제19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7장 (생 략)	제8장 (현행 제7장과 같음)
제23조 ~ 제26조 (생 략)	제25조 ~ 제28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8장 (생 략)	제9장 (현행 제8장과 같음)
제27조·제28조 (생 략)	제29조·제30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제9장 (생 략)	제10장 (현행 제9장과 같음)
제29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23년 기준 **세입 106,767천원**(공유재산 사용료 94,767천원, 배당금 12,000천원) 대비 **세출 30,000천원**(시설비)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5. 작성자(참여자)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장 신순옥(☎ 8686)
푸드플랜팀장 송상현(☎ 8870)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3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유행 변화가 빠른 음식문화 선도를 위해 대표음식에 대한 개념 변화

○ 현재 미식트렌드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 시행규칙과 조례를 통합하여 대표음식 개념 등 대한 일원화

2. 주요내용

○ **(안 제1조)** 대표음식에 대한 목적 변경

○ **(안 제2, 3, 10조)**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에 대한 정의 등 변경

- 전통음식뿐 아니라 연구·개발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음식까지 대표음식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가 상표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정의 및 조례에서 서비스표 명칭을 삭제하고 상표에 대한 개념 변경

○ **(안 제4, 5, 6조)** 대표음식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조건 변경

○ **(안 제11, 12, 14, 16, 17, 19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추가

- 시행규칙에 있는 대표음식점의 지정, 재지정, 취소, 지위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일원화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2. 18. ~ 2.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3.(가족복지과-2494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5.(예산실-57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67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시의 농·수·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대표색 짙은 음식 또는 연구용역과 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라. 그 밖에 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육성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표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표를 작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표음식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음식점은 대표음식 표준메뉴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및 각종 비품 등에 시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표음식 브랜드 매뉴얼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3. 대표음식점의 청결 또는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지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 간판 철거, 지정서 반납, 상표의 사용 금지
2. 시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 금지
3. 행·재정적 지원 중단

제13조(육성 지원) 시장은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대내외 홍보
4.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및 선진지 견학 지원
5. 그 밖에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정서의 설치) ① 대표음식점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훼손·멸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누구든지 대표음식점 이외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위 승계) 대표음식점의 상속인은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대표음식점의 명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대표음식점 재지정) ① 시장은 대표음식점에서 1년 이상 주조리자 또는 총괄매니저로 종사한 사람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를 사업장소와 사업내용이 동일하게 대표음식점을 인수할 경우에는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음식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명품 음식업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2. 그 밖에 시에서 제시한 조건의 이행정도
3. 대표음식점을 인수하려는 사람의 자격증 등 사업성공 가능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음식점을 재지정하는 경우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상표의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및 업소·기관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 지정업소
2. 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지정·협약된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③ 시장은 대표음식 상표 등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제품을 상품화하여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20조(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대표음식점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장 신순옥(☎ 8686)
미식개발팀장 이신홍(☎ 408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11호

발의연월일: 2024. 2. 19.

발 의 자: 박계수 의원,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최병배 의원
김태훈 의원

1. 제정이유

○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활성화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추진사업(안 제6조)
○ 홍보 및 협력(안 제7조,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제정안: 별첨

【붙임 1】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 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이하 “반려식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반려식물을 통한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식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7.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보급·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28.	농업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	경제진흥과
3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0.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4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10. 5.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5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9. 25.	지역경제과
6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3. 8. 7.	농업기술센터
7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1.	농촌테마과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공원여가과
9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2023. 6. 30.	농업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22.	농수산유통담당관
11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5. 12.	농업진흥과
12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13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2023. 3. 6.	농업기술원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27호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양동진 의원, 최현아 의원, 최병배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우성원 의원,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시민참여 활성화,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순천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활성화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

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운영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단체, 우수업소,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3조 관련)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 필요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비 확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세입(a)	-	-	-	-	-	-
세출(b)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시비	−380,000	−60,000	−71,000	−83,000	−83,000	−83,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4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60,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60,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5,000천원	5,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40,000천원 - l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40,000

❍ 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71,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71,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6,000천원	6,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50,000천원 - l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50,000

○ 2026년 이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83,000
세입	소계		
	-	-	-
세출	소계		83,000
	실태조사 인건비	· 실태조사 기간제 인건비 : 8,000천원	8,000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홍보비	· 다회용기 사업 홍보비 등 : 15,000천원	15,000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다회용품 시설 설치 및 운영 : 60,000천원 - lot 다회용기 카페 거리 시범 조성 등	6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참고 1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7. 5.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2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6. 9.	
3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5. 11.	자원순환과
4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4. 1.	환경과
5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11.	자원순환과
6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8. 3.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7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2019. 5. 30.	
8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2. 30.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9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6. 4.	자원순환과
10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3. 15.	자원순환과
11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3. 11.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12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4. 16.	자원순환과
13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29.	자원순환과
14	광주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8. 7.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8. 8.	청소행정과
1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19. 12. 30.	자원순환과
1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7. 31.	청소행정과
18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19. 11. 12.	청소행정과
19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2. 23.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20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3. 3. 2.	자원순환과
2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2. 11. 9.	자원순환과
2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2. 24.	재활용계
23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9. 29.	위생자원과
24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9. 24.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 6.	도시미화과
26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19. 9. 27.	청소행정과
27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18.	환경과(청소)
28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12. 8.	환경과
29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9. 11.	자원순환과
30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0. 29.	자원순환과
31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7. 10.	자원순환과
32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9. 21.	청소과
33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0. 30.	청소자원과
34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7. 10.	자원순환과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0. 6. 30.	자원순환과
36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11. 10.	관광복지국 환경과
37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9.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19. 12. 20.	환경과
39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0. 5. 13.	환경과
4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10. 19.	자원순환과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7. 16.	청소행정과
42	동해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10. 16.	환경과
43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12. 27.	자원순환과
44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1. 25.	환경관리과
45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 13.	자원순환과
46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0. 7. 10.	청소행정과
47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0. 11. 27.	청소자원과
48	부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15.	일자리복지국 청소자원과
49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9. 18.	재활용계
50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9.	청소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부산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8. 17.	청소행정과
52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2. 2. 25.	자원순환과
53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4. 1.	자원순환과
54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5. 10.	청소행정과
55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28.	자원순환과
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2. 15.	자원순환과
57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1. 12. 21.	환경과
58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2. 8.	자원순환과
59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10. 5.	환경사업소
60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7. 1.	자원순환과
6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7. 18.	자원순환과
62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7. 7.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63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0. 2. 26.	청소행정과
64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자원순환과
65	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7. 6.	청소행정과
66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3. 2.	청소과 재활용팀
67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12. 28.	청소행정과
68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3. 25.	청소행정과
69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5. 18.	자원순환과
70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2020. 5. 7.	자원순환과
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9. 30.	청소행정과
72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9. 27.	청소행정과
73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6. 4.	자원순환과
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23.	청소행정과
75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2. 2. 7.	청소행정과
76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5. 10.	청소행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1. 7. 15.	청소행정과
78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0. 19.	자원활용과
79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2. 11. 10.	청소행정과
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1. 18.	청소과
81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4. 7.	청소행정과
82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4. 7.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3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3. 10. 5.	청소행정과
84	서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3. 11. 10.	환경보호과
85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19. 12. 23.	자원순환과
8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3. 12. 18.	자원순환과
8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1. 3.	친환경정책과
88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6. 10.	자원순환팀
89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7. 6.	자원순환과
90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3. 16.	자원순환과
91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4. 28.	자원순환과
92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4. 2.	자원순환과
93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2019. 10. 28.	자원순환과
94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3. 30.	자원순환과(재활용팀)
95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3. 9.	자원순환과
96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1. 1.	산업건설국 환경과 청소행정팀
97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2021. 9. 27.	환경관리과
98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환경과
99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10. 29.	자원순환과
100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2. 27.	환경관리과
101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8.	자원순환과
102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1. 5. 27.	환경자원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03	울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2. 1. 3.	환경미화과
104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2. 31.	
105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9. 15.	청소위생과
106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3. 9. 27.	.
107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2. 29.	자원순환과
108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6.	자원순환과
109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4. 14.	청소자원과
110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1. 9. 30.	
111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4. 9.	청소행정과
112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1. 7. 1.	자원순환과
1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3. 5. 15.	자원순환과
114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2. 12. 29.	자원순환과
115	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7. 5.	자원순환과
116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12. 22.	청소행정과
117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11. 17.	환경보호과
118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19. 7. 9.	환경정책과
119	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2023. 12. 8.	기후환경정책과
120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2023. 7. 25.	청소지원과
121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0.	환경과
12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11. 20.	자원순환과
123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12. 18.	환경위생과
124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	2021. 5. 31.	자원순환과
125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3. 16.	식산업자원과
126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19. 10. 15.	자원순환과(유지윤)
127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3. 4. 3.	청소행정과
128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2023. 9. 15.	환경관리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29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3. 5. 12.	자원정책과
130	춘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2023. 9. 27.	자원순환과
131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0. 29.	자원순환과
132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19. 10. 30.	환경안전관리과
133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1. 5. 20.	
134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2020. 5. 21.	환경과
135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	2021. 9. 24.	자원순환과
136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9. 27.	자원순환과
137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20. 3. 31.	자원순환과
138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0. 2. 26.	환경관리과
139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2021. 3. 12.	자원순환과
140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7. 16.	문화환경국 환경보호과
141	함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6. 3.	자원순환담당
142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2. 10. 4.	환경과
143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1. 14.	자원순환과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29호

발의연월일: 2024. 2. 19.

발 의 자: 정광현 의원, 박계수 의원, 장경원 의원, 유영갑 의원, 장경순 의원, 최미희 의원, 이세은 의원,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이향기 의원, 오행숙 의원, 신정란 의원, 김태훈 의원, 서선란 의원, 김미연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 긴급복지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7.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소송 수행 경비 지원
9. 그 밖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지원 비용 등의 소용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정광현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참고 1	관련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

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u>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정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3.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⑫ (생 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1. 6.	민원봉사과
2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17.	주택과
3	광주광역시 동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24.	기획예산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2023. 11. 10.	토지정보과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9.	부동산정보과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2. 14.	부동산정보과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4. 1. 31.	부동산정보과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2. 28.	부동산정보과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1. 2.	부동산정보과
10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023. 10. 4.	주택정책과
11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1. 13.	민원지적과
12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2023. 12. 29.	주택과
13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 12. 22.	주택과
14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주택과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1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상위법 개정 및 시행예고에 따른 내용 반영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시행일: 2024. 3. 29.]

2.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 상위법령 기재 및 '빈집', '빈집정비사업'의 정의 구체화 **<일부개정>**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 **(안 제5조~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 실태조사 실시,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실태조사 대행,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안 제7조)** 빈집정비사업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사항 **<신설>**

- 빈집 철거, 빈집 철거 후 활용 등

○ **(안 제8조)**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 빈집정비사업 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등

○ **(안 제9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빈집 매입 및 활용 방법 및 범위, 활용 시 이용자 선정 방법 등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5. ~ 2024. 2. 5.)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11.(가족복지과-12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3. 12. 27.(도시공간재생과-10035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1.(예산실-4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5.(순천시 공고 제2024-107호)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다.

③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 철거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설치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2. 비용추계의 전제

○ 빈집정비(철거)사업 추진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50동씩 철거사업 추진
- 지원금: 4백만원/동
- 사업비: 매년 200백만원(도비 35, 시비 165)

○ 빈집 철거 후 활용 사업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5동씩 철거 후 활용사업 추진(공유주차장, 소공원 등)
- 사업비: 60백만원(12백만원/동, 5동)

○ 빈집 안전조치 사업 추진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10동씩 안전조치 사업 추진(출입폐쇄 등)
- 사업비: 10백만원(1백만원/동, 10동)

○ 빈집 실태조사 추진(수립주기 5년)

- 계 획: 2027년 빈집 실태조사 추진(도시지역, 농어촌지역 함께 추진)
- 사업비: 1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세입(a)	-	-	-	-	-	-
세출(b)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도비 및 시비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4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4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34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연구용역비	•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70,000,000원*1회	70,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5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7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3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연구용역비	• 빈집 실태조사 용역	100,000,000원*1회	100,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도시디자인국	도시공간재생과	과장	오 행 석(☎ 5990)
		장기방치건물팀장	김 종 경(☎ 303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4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박람회 이후 신규시설 이용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등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정기휴무 도입 등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 국가정원 정기휴무일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4조) 관람료 인상 및 탄력적 운영 관련 조문 개정

○ (안 제8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

○ (안 제20조) 신규 체험시설 및 이용 관련 조문 개정

○ (안 제23조)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문 개정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있음(의견청취: 2024. 1. 18. ~ 2. 7.)

<table>
<tr><th>연번</th><th>부서명</th><th>대 상 사 무</th><th>비고</th></tr>
<tr><td>1</td><td>관광과</td><td>(추가) 별표 4 이용료 - 캐빈하우스 이용료 추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이용료</th><th>비고</th></tr>
<tr><td rowspan="3">캐빈
하우스</td><td>숙박</td><td>150,000원</td><td></td></tr>
<tr><td rowspan="2">공간
대여</td><td>20,000원</td><td>4시간
이하</td></tr>
<tr><td>40,000원</td><td>4시간
초과</td></tr>
</table></td><td>수용</td></tr>
</table>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8. ~ 2. 7.)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3.(가족복지과-2495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7.(예산실-7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56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기휴무) ① 순천만국가정원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체험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행사나 시설에 대해"로, "관람권을 발급"을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20조의 제목 "(관람차)"를 "(체험시설 등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람차를"을 "체험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을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비 등을"로, "이용권을 발급"을 "징수"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마목 중 "국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
<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
<tr><td>개인</td><td>10,000원</td><td>7,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2">무료</td></tr>
<tr><td>순천시민
1년 회원권</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1년 회원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r>
</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7. “1년 회원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별표 4]

이용료(제20조 관련)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이용료</th><th>비고</th></tr>
<tr><td rowspan="4">관 람 차</td><td colspan="2">성 인</td><td rowspan="2">3,000원</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청소년</td></tr>
<tr><td colspan="2">유아, 어린이</td><td rowspan="2">2,000원</td></tr>
<tr><td colspan="2">65세 이상, 장애인</td></tr>
<tr><td rowspan="4">정원
드림호</td><td colspan="2">성 인</td><td>12,000원</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청소년</td><td>10,000원</td></tr>
<tr><td colspan="2">유아, 어린이</td><td>7,000원</td></tr>
<tr><td colspan="2">65세 이상, 장애인</td><td>6,000원</td></tr>
<tr><td rowspan="3">캐빈
하우스</td><td colspan="2">숙박</td><td>150,000원</td><td></td></tr>
<tr><td rowspan="2">공간 대여</td><td>4시간 이하</td><td>20,000원</td><td></td></tr>
<tr><td>4시간 초과</td><td>40,000원</td><td></td></tr>
</table>

<비고>

1. “유아” 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정기휴무) ① 순천만국가정원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체험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4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행사나 시설에 대해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운영--------.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6.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관람차) ① 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체험시설 등의 이용) ① 체험시설을 ----------. ② ----------. 1. (현행과 같음) 2. ---------- 미만---- 3.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비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
제2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정원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 략) 2. 위촉직 위원 가. ~ 라. (생 략) 마. 전남도청 국장	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국·과장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h colspan="4">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th></tr>
<tr><th>성인</th><th>청소년
·군인</th><th>어린이</th><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h>유아</th></tr>
<tr><td>개인</td><td>8,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d>14,000원</td><td>12,000원</td><td>8,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d>11,000원</td><td>8,000원</td><td>6,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
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3">무료</td><td>6,000원</td><td>5,500원
(단체:4,500원)</td><td>4,000원
(단체:3,000원)</td><td>무료</td></tr>
<tr><td>순천
시민
1년
회원
권</td><td colspan="2">10,000원</td><td colspan="4"></td></tr>
<tr><td>1년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d colspan="4"></td></tr>
</table>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 란 36개월 이상 ~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
<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
<tr><td>개인</td><td>10,000원</td><td>7,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2">무료</td></tr>
<tr><td>순천시민
1년 회원권</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1년 회원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r>
</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7. “1년 회원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별표 4]

이 용 료(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비고>

1.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별표 5]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대회의장 공연장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전시장 회의시설	1일	09:00 ~ 18:00

[별표 4]

이 용 료(제20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유아, 어린이		2,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정원 드림호	성 인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유아, 어린이		7,000원	
	65세 이상, 장애인		6,000원	
캐빈 하우스	숙박		150,000원	
	공간 대여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40,000원	

<비고>

1.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정원도시센터	정원운영과	과장	방수진(☎ 2722)
		정원정책팀장	이미숙(☎ 2723)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9. (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3. 28.]

[시행일: 2024. 3. 29.] 제65조의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5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박람회 이후 소형경전철 요금 및 갈대열차 관련 체계 재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6조) 소형경전철 매표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갈대열차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있음(의견청취: 2024. 1. 23. ~ 2. 13.)

연번	부서명	대 상 사 무	비고
1	의회사무국	(수정) 소형경전철 유아 이용료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	수용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3. ~ 2. 13.)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2.(가족복지과-24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23.(예산실-1002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3.(순천시 공고 제2024-209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왕복권, 통합권으로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을 “왕복권으로 하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을 “임시휴무”로, “제5조,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청소년, 군인	8,000원	6,000원	
	어린이	6,000원	5,000원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 군인	5,000원	4,000원	
	어린이	4,000원	3,000원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원	5,500원	
	청소년, 군인	5,000원	3,500원	
	어린이	4,000원	3,000원	
	순천지역 초/중/고등학생	3,000원	2,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 왕복권, 통합권으로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 발권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 발권 및 인터넷 예약 발권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권방법) ----------왕복권으로 하며 ----------. ----------.
제11조(갈대열차) ①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갈대열차)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 임시휴무---------- 제5조----------.

현 행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5,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 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 시에만 할인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유아"란 3세 이상 ~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

개 정 안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청소년, 군인	8,000	6,000	
	어린이	6,000	5,000	
순천시민	성인, 청소년, 군인	5,000	4,000	
	어린이	4,000	3,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어린이	4,000	3,000	
	순천지역 초/중/고등학생	3,000	2,000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면제 대상 >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갈대열차 이용료(조례 제11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이용료</th><th>비고</th></tr>
<tr><td rowspan="4">관 람 차</td><td>성 인</td><td rowspan="2">3,000원</td><td rowspan="4"></td></tr>
<tr><td>청소년</td></tr>
<tr><td>소인</td><td rowspan="2">2,000원</td></tr>
<tr><td>65세 이상, 장애인</td></tr>
</table>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td><td>
<삭 제>
</td></tr>
</table>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정원도시센터 정원운영과 과장 방수진(☎ 2722)
정원운영2팀장 차영현(☎ 296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6호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단일관람권 운영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개정에 맞춰 관람료를 동일하게 개편

○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기휴무일 도입

○ ‘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따른 조문 정비

○ 그 밖에 제명 변경에 따른 관계 규정 현행화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21조)** ‘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따른 조문 정비

- 제2조 정비, 제21조 삭제

○ **(안 제4조의2)** 정기휴무일 근거 마련: 매월 마지막 월요일

○ **(별표 1)** 관람료 개편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8. ~ 2.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2.(가족복지과-2410호)
-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8.(예산실-766호)
-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8.(순천시 공고 제2024-17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연생태관, 자연의소리체험관”을 “자연생태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기휴무) ① 순천만습지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
<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
<tr><td>개인</td><td>10,000원</td><td>7,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2">무료</td></tr>
<tr><td>순천시민
1년회원권</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1년회원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r>
</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7. “1년 회원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습지시설”이란 순천만 중심시설지구(자연생태관, 자연의소리체험관 등), 용산전망대,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특산품관, 낭트정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 6.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뜻) ----------. 1. (현행과 같음) 2. ----------자연생태관 ----------.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정기휴무) ① 순천만습지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자연의소리체험관) 자연의 소리체험관 운영시설은 소리체험관, 에코사운드, 인포메이션 등이며 자연에서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저서동물 등의 다양한 자연의 소리 체험 기능을 수행한다.	<삭 제>
제29조(관리 운영의 위탁)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관리 운영의 위탁)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h colspan="4">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th></tr>
<tr><th>성인</th><th>청소년
·군인</th><th>어린이</th><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h>유아</th></tr>
<tr><td>개인</td><td>8,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d>14,000원</td><td>12,000원</td><td>8,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d>11,000원</td><td>8,000원</td><td>6,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
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3">무료</td><td>6,000원</td><td>5,500원
(단체:4,500원)</td><td>4,000원
(단체:3,000원)</td><td>무료</td></tr>
<tr><td>순천
시민
1년
회원
권</td><td colspan="2">10,000원</td><td colspan="4"></td></tr>
<tr><td>1년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d colspan="4"></td></tr>
</table>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 란 36개월 이상 ~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
<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
<tr><td>개인</td><td>10,000원</td><td>7,000원</td><td>5,000원</td></tr>
<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
<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 rowspan="2">무료</td></tr>
<tr><td>순천시민
1년회원권</td><td colspan="2">10,000원</td></tr>
<tr><td>1년회원권</td><td>30,000원</td><td>20,000원</td><td>10,000원</td></tr>
</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 고>

1.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 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7. “1년 회원권” 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정원도시센터 순천만보전과 과장 김 경 만(☎ 6051)
순천만관리팀장 박 영 준(☎ 607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